공고 제2023-63호

과천도시공사 직원(행정7급) 채용 공고

과천도시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과천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채용방법	분야	인원	담당업무
계			2명	
행정7급	공개채용	일반행정	1명	· 급여지급 및 원천세 등 급여관련 세무 업무
행정7급	공개채용	용지판매 및 보상	1명	· 개발용지 판매 및 보상업무

※ 채용분야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2 근로조건

1.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1일 8시간, 주40시간)
2. **보　　수**: 공사 규정에 따름

직 급	보수수준
행정7급	○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공무원 9급 상당) ○ 기타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연차휴가 지급, 선택적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 직원 휴양소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

3. **담당업무**: 모집부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필요시 공사 인사운영 정책에 따라 다른 유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용 후 인사규정에 따라 전환배치가 가능함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기본자격	❍ 공사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행정7급 (일반행정)	❍ 공개채용 ※ 우대사항(서류전형 가산점) 1) 관련경력: 급여관리·지급, 원천세, 주민세 등 세금신고 2) 관련자격: 컴퓨터활용능력
❍ 행정7급 (용지판매 및 보상)	❍ 공개채용

※ 기본자격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분야별 자격은 해당분야 기준을 충족하면 응시가능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11일간)	2023. 3. 16.(목) ~3. 27.(월)	·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구직사이트 등 게시
원서접수(5근무일)	2023. 3. 21.(화) ~3. 27.(월)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단계 서류전형	2023. 3. 28.(화)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2023. 3. 29.(수)	·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게시
2단계 필기시험	2023. 4. 1.(토)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2023. 4. 6.(목)	·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게시
3단계 면접시험	2023. 4. 10.(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2023. 4. 12.(수)(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발표	2023. 4. 14.(금)	·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게시
임용후보자 등록	2023. 4. 18.(화)까지	· 임용등록 관련서류 제출
임용예정일	2023. 4. 19.(수)	

※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장소는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개별 통보하지 않음)

▢ 전형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전형	⇨	인성검사+NCS 시험	⇨	실무면접 + 본면접시험
채용인원 10배수 선발		채용인원 5배수 선발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합격자 3배수 이내)

※ 가중치 → 실무30% + 본면접70%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3. 21.(화) ~ 3. 27.(월)**(5근무일)

※ 마감일 2023. 3. 27.(월) 18:00 이전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cuc.or.kr) >「채용정보 및 지원하기」**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참조, 반드시 지정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부**(별지 참조) ▸ **직무능력기술서 1부**(별지 참조)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점 등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해 **면접시험 전형 시** 제출

※ 기본제출 서류 외 제출금지

※ 자격증, 경력증명, 가산점 등 우대사항 증명서는 최종 면접일 면접서류 작성 시 제출

<주의> 본 채용은 블라인드채용으로 모든 제출서류는 출신지, 나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출신학교, 부모직업 등이 노출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단계: 서류 전형

○ 심사일자: **2023. 3. 28.(화)**

○ 심사대상: 응시자 전원

○ 심사기준: 기본자격(적합여부 판단), 전문성(40점), 활동성(60점), 포상가점(5점)

<포상내역>

○ 수상경력 : 대통령(5점), 국무총리(4점), 장관(3점), 도지사(2점), 시장(1점)
(중복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포상 1개만 인정)

※ 본인의 작성내역 기준으로 자격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면접 시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제출)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 바랍니다.

○ 합격기준: 평정점수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분야별 채용인원 10배수) 결정.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2단계

1) 필기시험

○ 시험일자: **2023. 4. 1.(토)**

○ 시험장소: 과천시민회관 예정

※ 시험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대상: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분야별 채용인원 10배수)**

○ 시험유형: **인성검사 및 NCS국가직무능력 시험**

- 인성검사: 심리적안정성, 사회성, 성실성, 지적개방성, 수용성, 도덕성 등
- NCS시험: 5개 과목 50문항(과목별 40% 미만득점자는 과락)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10문항	10문항	10문항	10문항	10문항

○ 합격기준: NCS국가직무능력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 인성검사 부적합 판정 시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검사결과는 면접 시 활용

<가산점부여>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10%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가족 3% 가산
○ 「자격(면허)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사(해당분야) 5%가산
○ 해당분야 과천도시공사(舊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근무자 및 체험형 인턴경력 2%~3%가산

4. 3단계: 면접시험

○ 시험일자: **2023. 4. 10.(월)**

○ 시험장소: 과천도시공사

○ 시험대상: 2단계 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분야별 채용인원 5배수)

○ 시험유형: 블라인드 면접전형

구분	실무면접	본면접
평정요소	• 업무 이해도(30점) • 업무관련 경험 및 경력(20점) • 발전가능성(10점) • 업무관련 지식 및 응용능력(30점) • 위기대처능력(10점)	•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 전문인의 기본자질 및 전문지식(20점), • 도덕성(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 성실성(15점) • 협조성 및 조직적응(10점)

※ (가중치 → 실무30% + 본면접70%)

○ 합격기준: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 3배수 이내) 결정

※ 2인이상 위원이 70점미만으로 평정시 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5. 최종합격(임용)

○ **최종합격자발표: 2023. 4. 14.(금) 공사 홈페이지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2023. 4. 18.(화) 18:00까지**

○ **임용예정일: 2023. 4. 19.(수)**

○ 임용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됨

○ 예비합격자는 6개월 이내 동일직종·분야 결원발생시 임용할 수 있음

※ 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사 여건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이 아닌 신규채용 절차로 모집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고, 수습기간 평가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항목 중 평가자 2인이 같은 항목에 3개 이상 미흡으로 중복하여 평가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직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운영자, 시험출제자, 면접시험점수, 다른 응시자의 성적 등), 지식재산권(외부출제)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

6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접수(지원서 저장 등록 후 수정불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기준으로 자격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며,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인적사항(나이,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하며, 면접전형시에도 위와 관련된 사항을 발언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중복지원 및 지원 분야와 다르게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증빙자료는 최종면접일 면접서류 작성시 확인

   ○ **경력증명서 :** 근무부서, 기간별(연·월·일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처 발급 경력증명서만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요청시 반환하되,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
     ※ 반환청구기간 이후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며 반환 불가합니다.
   -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5. 과천도시공사는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임용이 확정된 이후에도, **최종합격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인사팀(☎(02)500-1122)으로 문의바랍니다.

NCS기반 행정7급(일반행정) 직무기술서

<table>
<tr><td rowspan="4">분류체계</td><td>대분류</td><td colspan="3">02. 경영·회계·사무</td></tr>
<tr><td>중분류</td><td>01. 기획·사무</td><td>02. 총무·인사</td><td>03. 재무·회계</td></tr>
<tr><td>소분류</td><td>01. 경영기획</td><td>01. 총무
02. 인사·조직</td><td>01. 재무</td></tr>
<tr><td>세분류</td><td>01. 경영기획</td><td>01-01. 총무
02-01. 인사</td><td>01-01. 예산</td></tr>
<tr><td>직무 정의</td><td colspan="4">○ (경영기획) 경영기획 업무는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 (총무)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 (인사) 조직에 적합한 인재 채용부터 배치, 교육, 승진, 인사평가, 보상, 근태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직무이다.
○ (예산) 예산은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경영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통제하는 일이다.</td></tr>
<tr><td>주요
능력단위</td><td colspan="4">○ (경영기획) 07. 경영실적분석
○ (총무) 02. 행사지원관리, 04. 비품관리, 07. 업무지원, 08. 총무문서관리
○ (인사) 01. 인사기획, 03. 인력채용, 04. 인력이동관리, 11. 조직문화 관리
○ (예산) 03. 연간종합계획 수립</td></tr>
<tr><td>필요 지식</td><td colspan="4">○ (경영기획) 지표운영 정의서에 대한 개념, 재무·관리회계 지식,
○ (총무) 환경 분석방법, 복리후생 제도 운영, 사내 인력관리 제반규정
○ (인사) 임금관리, 사내 복무규정, 취업규칙, 전자인사관리시스템(EHR)
○ (예산) 예산운영지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식, 계정과목 분류와 정의</td></tr>
<tr><td>필요 기술</td><td colspan="4">○ (경영기획) 비즈니스 문서 작성 기술, 프리젠테이션 기법, 기획력
○ (총무) 정보수집능력, 법률해석 능력, 문서작성기술
○ (인사) 컴퓨터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 (예산) 예산수립을 위한 수리능력, 스프레드시트(엑셀) 활용능력</td></tr>
<tr><td>필요 태도</td><td colspan="4">○ (경영기획) 선행적 업무처리 자세, 경영목표에 대한 전략적 이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논리적 사고자세, 의견 조율과 합의도출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 (총무) 투명성, 주인의식, 공평하고 공정한 태도, 개선의지, 윤리의식
○ (인사) 여러 부서와의 협업자세, 정확성, 보안의식
○ (예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려는 태도, 정확성, 타부서와의 협업적 태도</td></tr>
<tr><td>관련 자격</td><td colspan="4">-</td></tr>
<tr><td>직업기초능력</td><td colspan="4">○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td></tr>
</table>

※ 상기 직무기술서는 응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사 시 수행하게 될 대표 업무를 설명한 내용이며, <u>대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u>할 수 있습니다.

NCS기반 직무기술서 (용지판매 및 보상)

분류체계	대분류	10.영업판매		
	중분류	02.부동산		
	소분류	01.부동산컨설팅	03.부동산중개	04.감정평가
	세분류	01.부동산개발	01.부동산중개	01.부동산·동산감정평가 02.기업가치평가
직무정의	○ (부동산개발) 토지, 자본, 노동, 지식 등을 결합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조성 공급 ○ (부동산중개) 부동산 자료 수집 제공, 부동산 현황 및 권리 분석, 부동산 고객 협상 및 상가·건물 권리금 거래 계약, 거래 계약 체결, 부동산 중개 부수업무 처리, 부동산 고객 및 중개 사무소 관리 ○ (부동산·동산감정평가) 높은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대상의 구체적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 ○ (기업가치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포함한 유형자산과 영업권,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기초자료 수집, 현장조사, 자료 분석절차를 거친 후 구체적인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일		
주요능력단위	○ (부동산개발) 01.개발사업현황조사 ○ (부동산중개) 01.부동산시장분석 04.부동산현황분석 05.부동산권리분석 07.부동산고객협상 08.부동산거래계약체결 ○ (부동산·동산감정평가) 07.감정평가서검수 09.토지현장조사 10.건축물·동산현장조사 12.지역요인·개별요인분석 ○ (기업가치평가) 03.기업현장조사			
필요지식	○ 토지·지장물 조사, 보상대상물 결정, 보상금액 산정 ○ 보상협의·대민업무 ○ 재결(수용 및 이의), 소송 등			
필요기술	○ 조사대상의 지적도상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는 능력 ○ 부동산 관계법령의 구조이해 능력 ○ 조사대상 물건 이해 능력(수목의 종류 등) ○ 캐드프로그램 운영 능력 ○ 부동산공법상 제한요인 인지 능력 ○ 민원해결 및 협상능력 등			
필요태도	○ 관련법규·조례·지침·기준을 준수하는 태도 ○ 객관적인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 태도 ○ 보상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분석력 및 합리적 사고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태도 ○ 문제 및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 ○ 판단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는 태도			
관련자격	-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			

※ 상기 직무기술서는 응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사 시 수행하게 될 대표 업무를 설명한 내용이며, 대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 과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6.>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2019. 11.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공공기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